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11. 17 선고 2022나20407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

피고, 피항소인 합자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만석

변 론 종 결 2022. 10. 6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7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. 2. 16. 선고 2020가단141247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7. 12. 3. 접수 제212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원고가 2004. 1.경부터 2007. 11.경까지 피고로부터 플라이애쉬 등 각종 골재 및 자재를 공급받고,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왕,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각종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2007. 12. 3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,000,000원,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,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, 원고가 2007. 12.경 부도가 났고 피고가 2007. 12. 28. 원고를 상대로 2007. 11.경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95,510,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(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2007차254) 2008. 1. 19.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. 1. 19.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항변한다. 살피건대,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의 대표청산인 D이 2020. 3. 25. 피고의 대표자인 K에게 ‘지금 (동업자였던 L과) 항소심 진행 중이구요. L이 검찰에서 횡령 인정했습니다. 다른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. L이 사건 끝나고 나면 그때 경매 넣으십시오. 그때가 되면 저도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. 마지막 부탁드립니다.’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,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, 즉 피고가 2020. 2. 26.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20. 3. 16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, D이 2020. 3. 25. K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, D이 2020. 3. 25. 피고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1) 피고에게 관련 사건 종결 후 담보권을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그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관련 사건 종결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이의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,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기현, 판사 윤영수, 판사 서동인

[별지]

목 록

1. 경기도 연천군 도로 132㎡
2. 경기도 연천군 공장용지 28㎡
3. 경기도 연천군 공장용지 93㎡
4. 경기도 연천군 잡종지 172㎡
5. 경기도 연천군 임야 8㎡
6. 경기도 연천군 임야 102㎡
7. 경기도 연천군 공장용지 1154㎡
8. 경기도 연천군 공장용지 2948㎡
9. 경기도 연천군 임야 46㎡
10. 경기도 연천군 계방 261㎡
11. 경기도 연천군 , , ,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연천군

위 지상 철골조 루프컨넵지붕 2층 공장

후생복지시설, 사무실

1층 후생복지시설 162.00㎡

2층 사무실 162.00㎡. 같.

1) 원고는 2020. 3. 25.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(2022. 10. 4.자 준비서면 등)